

《2023. 5월 2차》

청렴메아리

공정하고 청렴한 수원특례시 만들기
시민 여러분과 공직자의 **관심과 참여**가 매우 중요합니다.



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

청렴 韓 · 수원

관련 내용

○ 개 요

-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, 부동산 등 관련된 재산상 거래·투자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·투자를 돋는 행위 금지

○ 관련근거

- 「공무원행동강령」 제12조 (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)
- 「이해충돌방지법」 제14조 (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) (2022. 5. 19. 시행예정)

○ 상세내용

-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의 의미
 - 정보의 귀속이나 출처가 어디인지를 불문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된 일체의 정보를 의미하며, 해당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접근이 차단되어 한정된 관계자가 독점하고 있는 상태의 정보, 즉 정보접근 및 열람에 있어 관련 공무원이 일반인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어야 할 것임
-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검토 필요 기관
 - 주식 등 유가증권 거래 규제 : 각급 기관의 기금운영부서
 - 부동산 거래(투자) 규제 : 지방자치단체(도시계획, 도시개발, 건설 담당부서 등)

위반 사례

- 모 기초자치단체 회계과 A공유재산관리팀장은 화장지 인근에 위치한 민원인의 농지와 시유지를 교환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자, A팀장은 민원인B에게 시(市) 화장지 시설 증축 정보를 알려주지 않은 채 자신의 임야와 그보다 3배 비싼 민원인의 농지를 맞교환하자고 제의하였고, A팀장은 이렇게 취득한 해당농지를 시유지와 다시 교환함으로써 추가로 부당한 이득을 취함
- 모 기초자치단체 보육지원업무를 하는 A공무원은 관내 보육시설인 甲 어린이집이 약 8천 만원 상당 급매물로 나온 사실을 알게 되자, 지인B에게 매물정보를 알려주고 출장 시 B를 甲 어린이집으로 안내하는 등 시설장을 소개함

부조리
신고

- ♣ 공직비리익명신고시스템(시 홈페이지 하단배너  클릭)
- ♣ 감사관 핫라인(☎031-221-3650), 부패·청탁금지법 위반신고(국번없이 1398)